
입 법 정 보

2018-12호



목 차



1.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6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6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
7.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9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3
1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14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4
1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5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7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8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9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9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20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1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2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3
23. 어촌 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5
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6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7
2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7
27.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9
29.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30
30.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31.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3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3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4

34.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환경부).....	35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38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39
37.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9
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0
3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40
4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0
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1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1
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42
4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43
4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4
4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5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47
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8
4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9
50.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9

정부입법 예고

1.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6. 25.
- 마감일자 : 2018. 8. 6.

○ 주요내용

- 가.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총정원 기준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 산정(제7조 제1항 개정)
- 나. 학교 규모 및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배치(제7조 제2항 개정)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6. 25.
- 마감일자 : 2018. 8. 6.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558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를 기존 19개 분야에서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등(안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별표 1의

4 신설)

-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

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안 제26조,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

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식기반서비스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1)

-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범위를 기존 19개 분야에서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의 제출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요령, 제2017-7호)에 규정
- 2) 해당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

마.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추가(안 제22조제1항제1호)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술개발 성과보급 사업화 촉진 사업을 수행중인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을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에 추가하여 명확한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

※ 2018년도 예산안 부처별 보고서(공공기관) 관련 국회 예산 정책처 지적사항

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6. 26.

• 마감일자 : 2018. 8. 8.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산업변화 대응과 진입장벽을 없애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과제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별표에서 규정한 도시형소공인 업종(19개)을 통계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 전체 업종(25개)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나. 현행 제한된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 하도록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6. 26.

• 마감일자 : 2018. 8. 6.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여론집중도조사 위원회를 2019년 1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뉴스생산·유통·소비 전반의 독자권익 보호와 독자·뉴스생산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심의 범위

중 뉴스이용실태 조사 및 의견제시 등 기능 추가(제12조 제2항 제4호~제6호)

나. 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요건 추가(제12조 제3항, 제12조 제4항의 제3호~제5호)

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존속기한('19년 1월 31일까지) 한시조항 부칙 삭제(대통령령 제22003호 부칙 제2조 삭제)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6. 27.

● 마감일자 : 2018. 8. 6.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지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의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를 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확인 취소 및 회수 명령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의 기준을 강화·조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의 확인면제 인정 절차 간소화(안 제 10조의2 개정)

-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품의 경우 면제인정 대상 제품이나,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의 서류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간소화함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안 제 10조의3 신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취소 명령 및 회수 명령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다.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지정 변경, 준수사항(안 제10조의4 부터 제10조의6 신설)

- 시험기관으로 신청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숙련도 시험적합 판정을 받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숙련도 평가를 받는 등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라. 건축자재의 표지 도안 변경(안 제10조의7, 별표7 개정)
 - 건축자재 방출확인 적합 유효기간과 제품 유효기간표지 도안의 혼동 방지를 위해 표지 도안에서 유효기간 표기를 삭제
- 마. 공동주택 소유자의 라돈 권고기준 강화(안 제10조의10, 별표 4의2 개정)
 -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라돈 기준을 기존 200벵크렐 이하에서 148벵크렐 이하로 강화
- 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의 측정 시기 규정 개선(안 제11조의3항 개정)
 -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일반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강화(안 별표 2 및 별표 3 개정)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PM2.5) 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그 성격을 변경하고 기준치를 강화하며,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다른 오염물질의 기준을 변경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6. 27.
 - 마감일자 : 2018. 8. 6.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지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의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를 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등에 대한 확인취소 및 회수조치 등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확인여부의 자진 취소(안 제6조제6항 신설)

-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의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 결과 기준 이내이더라도 그 사실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안 제7조의2 신설)

- 지도·점검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취소 절차 및 확인 취소 건축자재 등 표지를 부착해서는 안되는 대상임에도 부착한 건축자재에 대한 회수조치 명령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

다.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의 공표방법(안 제7조의3 신설)

- 환경부장관은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

라. 권한의 위임(안 제13조 개정)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조치 명령, 시험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의 정지 명령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

마.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개정)

- 시·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을 환경보건협회에서 위탁·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화함

7.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6. 27.

● 마감일자 : 2018. 8. 6.

-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여객선의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는 기준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항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며, 해상운송사업자가 면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준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와 여객승선확인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객만족도 평가위원의 해촉 규정 도입(안 제6조의2)

- 1)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규정만 존재하고, 위원
의 해촉 규정이 없어 해촉 기준등이 불명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2) 해촉 기준 및 근거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임명과 해촉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여 행정업무 투명화 및 효율화 도모

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수리 권한 위임(안 제27조)

-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외 사업
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 신고의 수리로 운송 허용

* 관할청 : 외항→ 내항은 본부 연안해운과, 내항→ 외항은 지방
해양수산청

- 2) 정책부서에서 단순·반복 민원업무('17년도 895건)를 처리함에
따라 본연의 정책기능이 약화,민원인도 사안별 처리주체가 달라
불편

- 3) 내항 외항 간 일시적 운송신고의 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모두
위임하여 업무의 일원화 효율화 도모(본부는 정책기능 강화)

다. 면허기준 미달 관련 과징금 상향 조정(안 별표2)

- 1) 사업자가 면허기준 미달 시 면허 취소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음

* 내항여객선의 면허기준 사후미달, 사업계획 준수명령 위반 과징금
(두 건 과징금 기준금액 300만원 동일) : 1회 위반 60만원, 2회
150, 3회 300만원

- 2) 면허기준 미달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기준금액을 항공 철도 수준인 1,000만원으로 상향)

라. 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3)

- 1)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의무, 여객 신원확인

2) 위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강제력 제고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6. 27.
 - 마감일자 : 2018. 8. 6.
-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9조의2, 별표2, 별표3).
- 나.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17.12.26.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별표6)
- 다.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안 제23조 별표6)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6. 27.
 - 마감일자 : 2018. 8. 8.
-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30병상이상)이상의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을 갖추도록 개선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공이용 근거마련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안 제12조)

- 1) 스프링클러설비 설비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이상인 건축물로 시행('18.1.27)됨에 따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일부 건축물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화
- 2) 건축허가등의 동의제외 대상에 성능위주설계 심의통보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추가(안 별표2)

- 1) 현행 소방관계법령에서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공간에는 자동소화장치 중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제곱미터 이상인 대공간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범위를 확대

다. 중·소규모의 병원에 대한 소방시설등 설치강화(안 별표5)

- 1)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원실이 30병상 이상 있는 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라.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강화(안 제19조)

- 1) 모든 의료시설과 11층 이상 아파트 등에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도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안 제27조의2)

-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부여 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응시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의 기준일을 제2차시험일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명확화

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3조)

-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항목을 기존 국가기술자격증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하여 응시원서 제출의 편리성 제고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6. 27.

• 마감일자 : 2018. 8. 8.

○ 건축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경보설비 수신기의 설치위치 안내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경보설비 수신기 위치정보 추가(안 제14조)

1) 소방관리자 현황표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설치위치 안내
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제고

나. 거동불편 수용시설에 대한 인명대피 훈련강화(안 제15조)

1) 요양병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하여 인명대피 훈련을 현행 연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

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1) 연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 범위 확대

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안 제19조)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기존 30일에서 7일로 제
출기간을 단축하여 소방시설 불량사항 등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상향(안 제3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기준을 전 과목 평균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역량을 강화함

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현실화(안 별표7)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1·2차 분리시험(2014년)으로 시험
위탁기관의 수입-지출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타 자격시험
운영과 유사하게 응시수수료의 현실화

2) 1차 시험 : 1만 5천원 → 2만 3천원, 2차 시험 : 1만 3천원 →
3만 6천원

사.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완화(안 별표8)

- 1) 소방시설관리사 거짓점검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처분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다른 자격과의 형평성 반영

1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6. 27.
- 마감일자 : 2018. 8. 6.
-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6.25전쟁으로 수습되지 못한 유해 발굴사업을 허용하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보전산지에서 농어업인에게만 허용되었던 주택 및 부대시설을 임업인까지 확대 허용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 및 국민 불편사항 해소 하는 등 현행 법률 시행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민북지역에서 산지 일시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산지전용 지구를 생태적 산지이용지구로 명칭을 변경(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 나. 생태적 산지이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서류 종류와 보관의무에 대한 근거마련(제9조)
 - 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조문 정비(제12조, 제20조 제21조)
 - 라.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허용(제20조)
 - 마. 보전산지에서 임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 허용(제21조)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6. 27.
- 마감일자 : 2018. 8. 6.
-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용인시 세종 특별자치시 화성시 파주시의 지역군을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

○ 주요내용

가.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파주시의 지역군을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

1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6. 28.
- 마감일자 : 2018. 8. 7.

○ 유사 기반시설을 일부 통 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7.12.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추가 정비하고, 한시적(' 14~' 18년, 4년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 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1)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관리의 편의 도모
-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 4) 「하천법」상 하천시설의 일종이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 실적이 없는 “운하”를 “하천”으로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중복 지정하지 않고 하천의 세부시설로 단일화하여 관리하도록 함

- 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신설하여 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6) 비 공공시설로 자동차검사시설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고 다른 학원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동일하며 개별법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을 기반시설에서 삭제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6. 28.
- 마감일자 : 2018. 8. 7.
- 유사 기반시설을 일부 통 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7.12.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추가 정비하고, 한시적(' 14~' 18년, 4년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1)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의 편의 도모
 -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 4) 「하천법」상 하천시설의 일종이며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 실적이 없는 “운하”를 “하천”으로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중복지정하지 않고 하천의 세부시설로 관리하도록 함

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신설하여 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6) 비 공공시설로 자동차검사시설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고 다른 학원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동일하며 개별법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을 기반시설에서 삭제

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12.27.시행) 제85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 제2항)

다. 기존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안 제84조의2 제1항·제2항, 제93조의2)

1)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40%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해당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부지 내 증축 연장 허용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안 제44조 제1항)

1) 보전관리지역 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 제한(최대 20%)을 받지 않도록 개선

마.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필요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1) 조사범위 및 조사항목 등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편입하여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함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6. 28.

● 마감일자 : 2018. 8. 7.

○ 유사 기반시설을 일부 통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7.12.26.)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추가 정비하고, 한시적('14~'18년, 4년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장 특례에 대해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여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6조 제1항 제9호 및 11호)

- 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시설 중 부령으로 규정이 필요한 시설(운동장, 장사시설 중 일부 시설)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조항 신설
- 2)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함으로써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로 변경하여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반영

나. 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의해 이미 임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시행규칙 제6호에 다시 한 번 임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착오를 수정(안 제6조 제2항 제1호 삭제)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6. 28.
- 마감일자 : 2018. 8. 7.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사항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 (안 제25조의7)

- 1)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사업주가 취할 사후조치 의무를 규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13 제4호 머목)

- 1)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 장해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6. 28. ● 마감일자 : 2018. 8. 7.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 ·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안 제26조의2)
 - 1)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 건강 보호에 기여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6. 29. ● 마감일자 : 2018. 8. 10.
-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11.28. 공포, 법률 제15662호, 2018.6.12. 공포)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과태료 부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내용 및 사업착공 통보 결과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3조)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작성 판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와 검토내용의 공개(안 제55조의2)
 - 1)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함
- 라. 사업 착공 등의 통보내용 공개(안 제55조의4)
 - 1)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 착공 등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시·군·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함
- 마.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56조의 2, 별표 3의2)
 - 1)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총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함
- 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사유 구체화(안 제63조의2)
 -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사유를 정함
- 사.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78조 별표10)
 - 1) 조치명령 불이행 등에 관한 위반회수별 부과기준을 정함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6. 29.
- 마감일자 : 2018. 8. 10.
-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의 경우,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행기반을 강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 검토기관과 협의 내용 통보시 “재검토” 통보 관련 법적근거 명확화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투명성·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부정

행위자 제재 근거 마련, 과태료 관련 입법미비 사항 보완, 법문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의 경우, 국민 의견수렴 시행기반 강화(안 제13조)

- 1)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 등에 대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을 들을 경우, 의견수렴 범위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 검토기관 명확화(안 제17조, 제28조)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 검토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는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다. 협의내용 통보시 “재검토” 통보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29조, 제45조)

- 1) 해당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시행이 환경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주관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협의의견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자격검정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신설(안 제63조의2)

- 1)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응시를 3년간 정지

마. 과태료 관련 입법 미비 사항 보완(안 제76조)

-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근거 마련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6. 29.
- 마감일자 : 2018. 8. 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고탄연료제품 사용 허가제 도입에 따른 관련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련 용어 수정(별표8)

- 1) 고탄연료제품 사용신고제가 사용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용어를 수정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6. 19.
- 마감일자 : 2018. 8. 8.

- 고탄연료제품(SRF)의 입지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주거 지역 인근 등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 방지, 고탄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등 환경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용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발생에 따른 생활폐비닐 재활용 시장을 안정화를 위해 품질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고탄연료제품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절차 마련(안 제20조의7)
나. 고탄연료제품 최소 사용량 기준 상향(안 제20조의7)
다. 고탄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커피찌꺼기 추가(별표1)
라. 고탄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관리 기준 강화(별표9, 별표10)
마. 검사기관의 다이옥신 측정결과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별표10)
바. 생활폐비닐로 제조한 성형 고탄연료제품에 한해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합리화(별표 11)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6. 29.

• 마감일자 : 2018. 8. 8.

- 지방공기업법의 실효성 강화와 지방공기업 윤리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경영공시 의무위반, 회계부정,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제출 및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공기업 경영을 위해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보장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35조 및 제66조)

- 1)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결산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중 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되어있어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곤란함
- 2)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립 지자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코자 함. 아울러 기존 회계감사 자격요건인 ‘공인회계사’를 지방공기업 외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직위’에 부합하도록 ‘회계감사인’으로 명칭을 수정함

나.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46조 및 제75조의2)

- 1)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행안부장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보·시정요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2)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행안부장관의 통보 및 시정요구 외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함
다. 상임감사 운영 의무기관 지정근거 마련(안 제58조)

- 1) 현재 지방공기업 내부 상임감사 운영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상의 규정은 없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해 일정규모(매출액 1천억 또는 임직원 500명)이상 기관의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상임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전문적·상시적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함
-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공단의 경우 상임감사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규모 등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국가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타 기관 감사체계와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라.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8조)

- 1) 경영평가 시 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음
- 2)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 경영평가 허위 실적자료 제출 또는 금품·향응 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조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와 평가급 수정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코자 함

마. 지방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 의무 신설(안 제78조의6)

- 1) 현행법 상 기관 설립·해산 시 주민의견 청취, 정보공개 등 소극적·수동적 참여방식만 규정되어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 등), 경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자치분권 확대·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참여역량 및 욕구 증대에 맞추어 공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가 필요함
- 2) 지방공사·공단의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주민 참여 확대·보장 계획 수립의무를 신설코자 함

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83~84조)

- 1) 공공기관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 손해배상 등 제재방안을 상세하게 규정한 국가공공기관과

- 달리, 지방공기업법에는 이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이 없음
- 2) 회계감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선임위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및 공사·공단 기관장, 임·직원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코자 함

23. 어촌 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6. 29. ● 마감일자 : 2018. 8. 8.
-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어촌·어항법」이 개정(법률 제15605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 용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수정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등기, 사업운영계획 승인 등과 관련된 세부 시행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수정(안 제3조제5항, 제14조, 제27조,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 나. 공단의 정부업무 위탁근거 보완(안 제44조제2항)
 - 현재 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바다해설사 양성 등 업무의 미비된 위탁근거를 보완함
 - 다.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 공단의 정관 인가 후 주된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및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라. 정부출연금 지급·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의3 신설)
 -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 미리 예산에 계상하고, 교부신청·타당성 검토를 거쳐 교부하고, 공단은 별도 회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 마. 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등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44조의4 신설)

- 공단은 매년 11월30일까지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정부에 제출(변경 포함)하고, 예산서에는 예산총칙·추정재무상태표·추정손익계산서·자금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바. 기존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삭제(안 제45조 삭제)

- 개정법률 제58조의2 신설로 공단의 정관 기재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에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을 삭제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부사항 규정(안 별표)

-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6. 29.
- 마감일자 : 2018. 8. 8.

○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던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을 국가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경자구역별 중점투자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자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에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
- 다. 국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감면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16조)
- 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2조)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6. 29. ● 마감일자 : 2018. 8. 8.
- 자유무역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요건으로 수출비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75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내복귀기업 매출액의 비중을 현행 국내기업 입주요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기업 수출비중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7조제2항)
 - 나. 국내외기업 간 입주지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형평성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출비중을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안 제7조제3항)
 - 다.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비중에 관계없이 입주 허용(안 제7조제4항)
 - 라. 기타,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과태료 감정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반영(안 제41조 관련 별표)

2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6. 29. ● 마감일자 : 2018. 8. 8.
- 18.3.20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의 정의가 신설되고, 과도한 사육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됨에 따라, 맹견에 해당하는 동물을 추가하고,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종류와 사육·관리 의무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인증 기준은 동물복지 측면 기준에 비해 수의사 처방전 보관 및 제출 의무 외에 잔류물질 기준 등 안전관리 관련 의무조항 없어 안전성, 위생 관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에 따라,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한 축산물 내 검출이 될 경우 인증을 취소토록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맹견에 해당하는 개의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1) 시행규칙 별표 3을 통해 기 규정 중인 맹견에 해당하는 개를 시행규칙 제1조의2 신설을 통해 이관하고 시행규칙 별표 3은 삭제
나.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및 반려(伴侶) 목적에 해당하는 동물의 종류 신설(안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1)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지정

2) 개체 당 제공되는 사육공간, 급이·급수 제공, 청결 관리 의무, 개체 위생관리 및 질병 관리 의무 등 추가

다.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6)

1)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 용량, 주의사항’ 준수 의무 신설

2) 사용해야하는 축종의 범위, 사용 방법, 적정 사용량 등 약품 설명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토록 의무화

3)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도록 의무화

라. 동물복지축산 농장 생산 축산물 내 잔류물질 검출 기준 마련(안 별표 6)

1)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금지

27.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6. 29

● 마감일자 : 2018. 8. 8.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하되,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명령으로 인해 철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조하여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 개조 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운행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안 제29조의2 별표 4)

-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50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나.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별표 6)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정함(안 제63조제2항제9호)

- 1)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함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7. 2.
- 마감일자 : 2018. 8. 13.

-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통한 대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축소, 우수 인력 유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5690호, 2018. 6. 12. 공포, 2018. 9.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성과공유 유형 정의 신설(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 1) 중소기업이 성과공유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과급, 공제, 기금, 각종 제도 등을 성과공유유형으로 정의

나. 성과공유 기준 신설(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 1) 성과공유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성과급 제외)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고, 중기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과공유를 하도록 함

다.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정비(안 제26조의2제3항 및 제4항)

- 1)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정비

라.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안 제26조의3 신설)

- 1)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신청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절차를 규정

29.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7. 2.

● 마감일자 : 2018. 8. 13.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축산물에서 농약사용 금지 등 위생·안전 관리 규정 신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농식품 인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10조, 제16조제1항, 별표 3, 별표 11)

- 1)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격년으로 친환경 농업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규정 마련

나.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 개선(안 제18조제2항, 별표 5, 별표 6, 별표 12)

- 1) 인증기관 변경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에서 “인증기관명” 항목을 의무표시 항목에서 제외

다.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 추가 공고방법 마련(안 제60조제1항)

- 1)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을 공고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공시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이해관계자 불편 최소화

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제공 정보 확대(안 제70조제1항)

- 1) 소비자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인증사업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사업자의 정보 범위 확대

마. 위생·안전관리 마련 등 인증기준 보완(안 별표 3, 별표 11)

- 1)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수확 및 수확 후 작업자위생조치, 도구·설비 위생관리, 인증 농장 주변 환경오염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생산물의 품질관리 규정 보완
- 2)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보완

바. 제조·가공 및 취급자 자료의 기록기간 개선(안 별표 4)

- 1) 제조·가공 및 취급자의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인증유효기간에 맞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

사. 부정행위를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등(안 별표 8)

- 1) 행정처분 적용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개별기준을 인증사업자와 인증품등으로 구분
- 2) 축사에 농약(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을 사용하거나, 축산물에서 농약(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이 검출되는 경우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 기준 마련
- 3) 농산물 처분기준에 맞춰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유기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아.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개선(안 별표 9의2)

- 1) 인증심사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은 폐지하되, 축산물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인증심사원 자격에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

자.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10)

- 1) “양호” 이상의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다른 인증기관이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는 승계하지 않도록 개선
- 2)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분 규정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기준 세부항목별 처분기준으로 개선

차.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유해성분 검사 확대(안 별표 13, 별표 14)

- 1) 공시 유기농업자재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유기합성농약을 추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0.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2.
- 마감일자 : 2018. 8. 13.

○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1항)

- 1)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장착되는 대형 사업용차량(9미터 이상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중 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불가피한 경우 장착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31.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2. • 마감일자 : 2018. 8. 13.
- 「주거급여법」 개정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도 이에 맞추어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급권자 범위 상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 삭제

3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7. 2. • 마감일자 : 2018. 8. 13.
-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인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보완하여 규범의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의 사무실 기준 완화(안 제18조, 별표 1의2 제12호)
 - 1) 직업소개에 필요한 직업상담 공간의 확보를 위해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소자본 창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및 유사인허가업종 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아울러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2호에서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창업자들에게 사무실을 독립 구조화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나. 별지 제20호서식의 “근로계약서” 명칭 및 내용 변경(안 제2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 별지 제20호서식)

- 1) 현행 직업안정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유료직업 소개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인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나서식의 명칭과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중복되어 소개알선을 받은 구인기업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음
- 2) 이에 별지 제20호서식 명칭을 “근로계약서”에서 “소개요금 약정서”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임금과 소개요금으로 간소화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7. 2.
- 마감일자 : 2018. 7. 31.

- 건설기계기사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직종이지만 다수의 기사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하는 건설기계기사들에 대한 산재보험 안전망 확대가 필요함.

또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 대한 의학적 연구 축적을 바탕으로, 유해 요인 별 노출량 노출기준 등 법령상 산재 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 산재보험법에 위임된 ‘산재보험급여 전용계좌 운영과 관련한 사항’, ‘산재보험급여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며,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안 제125조제2호)

- 1) 건설기계관리법 에 규정된 건설기계 종류 총 27종 중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의 범위를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27종 전체로 확대함.

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별로 노출량 노출기간 등 산재인정 기준 개선(안 별표3 제5호, 제7호, 제10호)

- 1) 석면에 의한 유발 상병을 3개 유형(폐암 후두암/악성중피종/난소

암)으로 세분화함.

- 2) 벤젠 노출량 기준을 기존 1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낮추고, 유발상병에 ‘골수증식성질환’과 ‘비호지킨림프종’을 추가함.
- 3) 비강 부비동 암 원인물질에서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을 삭제하고 폐암 발암물질로 규정함.

다. ‘산재보험급여 전용 수급계좌’ 운영 관련사항(안 제77조의2 신설, 제81조의2 신설)

-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신청인에게 전용계좌로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수급권자는 보험급여 신청시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토록 함.
 - 2) 수급권자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결정일 부터 14일 이내에 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권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3)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
- 라. 산재보험급여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 산정방법(안 제26조제1항)
- 1) 산재보험급여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을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에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으로 변경함.

마.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34.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7. 3.
- 마감일자 : 2018. 8. 13.

○ 자연공원법은 지난 ‘80년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및 공원관리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리원칙 등이 부재하여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 공원 관리방향을 제시하는데 부족한 면을 보이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자연공원에 대한 국민 수요의 증가와 같은 대 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구립공원, 시립공원 등 공원의 관리주체와 위상을 고려한 공원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공원계획 및 용도지구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경관 및 자연·문화자원현황 등에 대한 자연공원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자연공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생태계보호·복원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공원구역 인근 지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 경관 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자연공원과 그 성격과 보호·관리 체계가 상이한 지질공원은 현행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 관리주체에 따른 편제 구분 및 조문의 세분화

- 1) 현행 국립·도립·군립공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정된 편제를 공원지정·관리주체별로 장을 구분하고,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하는 등 자연공원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주요 조문을 세분화하여 86개인 조문 수를 109개로 늘림

나.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편제로 편성

- 1) 공원지정, 공원 보전·관리계획, 용도지구, 보전을 위한 행위 제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원사업 등으로 절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개편하여,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다. 목적 조항 보완 및 관리 기본원칙 신설 (안 제1조 및 제2조)

- 1) 목적 조항에 미래세대의 권리를 명시하고,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자연공원 관리 이념을 명확히 함

라. 자연공원조사와 공원계획의 연계성 강화 (안 제8조)

- 1) 자연공원조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연공원조사 결과를 공원계획과 공원 보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함

마.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안 제9조)

- 1) 현재 10년마다 전국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수립·시행하는 공원 기본계획을 자연공원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장기전망, 정책목표 및 전략 등을 포함하는 등 그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5년마다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공원기본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함

바. 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효과성 평가 (안 제20조 부터 제25조까지)

- 1) 현행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으로 수립 관리되던 계획체계를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계획의 수립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5년마다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를 공원 보전·관리 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과 이행간의 연계를 갖추도록 하고 동시에 장기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지향함

사. 용도지구를 현행 4개에서 5개로 세분하고, 각 용도지구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 (안 제26조부터 제31조)

- 1) 인위적으로 교란되지 않은 자연생태계와 지리·지형적 특징을 보유한 원시자연지역, 국가적 또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 학술적·과학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을 공원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학술연구·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허용함 (안 제27조)
- 2)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지역,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생물이 살고 있는 지역,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지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하고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함 (안제28조)
- 3) 공원특별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보존을 위한 완충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 경관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고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함(안 제29조)
- 4)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공원마을지구로 지정하고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함 (안 제30조)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고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함(안 제31조)

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원사업 (안 제41조부터 제54조)

1) 국립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생태계 보호·복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험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탐방안내, 자원봉사활동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함

자.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지정, 행위제한 (안 제55조부터 제71조)

1)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지정, 시·도 및 시·군·구공원위원회, 용도지구,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보전을 위한 행위제한,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원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함. 국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원과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위상에 맞는 행위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

차. 자연공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안 제79조)

1) 자연공원조사 결과 등 자연공원의 보전·관리 및 탐방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공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자연공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함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8. 7. 3.

● 마감일자 : 2018. 8. 13.

○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에 입국한지 1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한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고 있으나, 입국한지 3년이 경과한 후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와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의 내용과 방법,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조사절차 등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예고일자 : 2018. 7. 3.
- 마감일자 : 2018. 8. 13.

○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급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 정착자산형성 지원금, 교육지원금 등 업무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예고일자 : 2018. 7. 3.
 - 마감일자 : 2018. 8. 12.
-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2018.6.1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증연계 투자 총액 한도를 조정하여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7. 3.

• 마감일자 : 2018. 8. 1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상에 배치하는 진로 및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교사자격을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학교의 교사 채용 및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17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교사자격을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에서 ‘특수학교(중등)의 정교사·준교사, 실기교사’로 개정

3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7. 4.

• 마감일자 : 2018. 8. 13.

- 수도사업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은 지자체 중장기 수도정비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인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수도사업 위탁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사전 반영(안 제23조)

4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7. 4.

• 마감일자 : 2018. 8. 14.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명태, 대구의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조정하기 위함.

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7. 4.
 - 마감일자 : 2018. 8. 14.
-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추가하여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의 2서식)
- 나. 산소치료 처방전 서식(별지 제20호서식) 삭제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
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7. 5.
 - 마감일자 : 2018. 8. 14.
-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 승인 민원신청 구비 서류요건을 현실화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 변경 보고의 보고기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허용(안 제5조 제8조)
- 1)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 2) 이에,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소수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신청 시 구비 서류요건 재설정(안 제5조제2항)

- 1)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여 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인 반출승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등 환자가 일부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음
- 2) 이에, 환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요건을 재설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다.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의 합리적 조정(안 제21조제6항)

- 1) 현재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투약 등 취급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보고 하여야 하는 보고기한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음
- 2) 따라서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한 자의 경우 변경 보고기한이 더 빨리 도래하게 되어 보고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3) 이에, 변경 보고기한을 ‘취급 보고기한’ 으로부터 5일 이내로 하여 모든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변경 보고 기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7. 5.

● 마감일자 : 2018. 8. 14.

-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지역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을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17. 1. 8. 시행)으로 위기경보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불위기경보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산불피해 원인규명과 정확한 피해면적 산출 등 산불통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을 권장사항으로 변경
(안 제20조제2항)

1)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대신
시·도지사 등이 계획 수립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나. 산불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안 제32조제1항)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따라 위기 경보를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청장이 발령
하도록 일원화하여 산불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

다. 산불피해지 조사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42조제1항 신설)

1) 산불피해 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 등에 활용하고, 정확한 피해
면적 산출을 통한 산불통계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산불
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을 의무화함

라. 산사태 예방 등 지시 의무 위반시 소속기관 통보 의무화(안 제45조의18)

1) 산사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지시위반 또는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명단 및 그 사실관계 자료를 소속
기관 통보를 의무화하여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함

4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7. 5.

● 마감일자 : 2018. 7. 25.

○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5386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의 임시사용
용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용도 등 신설(안 제22조의 2)

- 법 개정예에 따라 임시사용 용도를 작목재배, 시험·연구 및 농어
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

조에 의한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로 정하고, 지침상
으로 운영하였던 임시사용의 대상·기간·절차·사용료를 규정
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조항 신설

4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7. 5.

● 마감일자 : 2018. 8. 14.

○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
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15525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현장실습 관련 교육부 및 고용
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7조제2항의 현장실습 지도·점검이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법 제9조제3항 신설로 관련 조항이 조정(제9조제3항→제9조제4항)
됨에 따라 시행령 인용 문구 정비하고, 법 제9조1항 개정으로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
(안 제6조)

다. 과태료 부과 주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및 현장실습계약 미준
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함(안 제23조)

1) 법 제27조2항 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함 (안 제23조제2항)

2)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함 (안 제23조제3항)

3) 법 27조 개정에 따라 별표2의 과태료 부과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2)

라. 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1)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하도록 함

4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7. 6.

• 마감일자 : 2018. 8. 16.

○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법률 제15709호, 2018. 6. 12.)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제조업체 등이 생산·수출·수입실적을 보고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명을 규정에 명시하여 행정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시험분야 등을 변경지정 신청 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 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정비(안 제24조)

1) 임상시험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변경사항이 생기게 된 경우, 변경보고 대상을 정하고 있는 바, 이 중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하위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업계 등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2) 이에, 해당 위임 규정을 삭제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의약품등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 관련 위탁기관 명시(안 제49조)

1) 의약품등의 생산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각 기관의 명칭 등이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각 협회 등의 명칭을 법령에 직접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조사를 통한 통계의 취합 등에 관해 민원인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조사 관련 법령의 근거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유전자치료제 정의규정 개정(안 별표 3)

- 1)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개발속도는 날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현행 유전자치료제의 정의규정에 해당 최신 기술을 모두 포섭하기 어려운 상황임
- 2)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전자 교정 기술 등 개발되고 있는 유전자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정의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라. 「약사법」 개정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8)

- 1) 「약사법」 개정(법 제15709호, 2018. 6. 12.)으로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과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부와 규정이 신설됨
- 2)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마.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분야·항목 변경지정 시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39호 서식)

- 1) 종전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변경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소재지변경, 시험분야·항목 변경 등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기간을 모두 90일로 정하고 있어 시험분야·항목 변경에 대한 신속한 지정이 어려운 상황임
- 2) 이에,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관련 다른 소관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험분야·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행 90일에서 60일로 처리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바.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6호 서식 등)

- 1) 종래 의약품 분류체계는 분류번호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으나, 해당 분류번호 표시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혼동될 수 있어 허가 관련 서식에서 분류번호를 삭제하고자 함
- 2) 또한, 의약품의 품목갱신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여 지방식약청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처리에 있어 민원인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7. 6.
 - 마감일자 : 2018. 8. 16.
-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정 게재시 투자자에 통지 의무화(안 제68조제5항제13의4호)
 - 변경된 중요 게재사항을 투자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시 청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나.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안 제68조제5항제13의5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만 온라인소액증권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도록 함.
 - 다. 발행 요건 달성시 통지(안 제68조제5항제13의6호)
 - 투자자가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요건(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달성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행 요건 달성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라. 정정 게재 시 투자자 확인 여부 재확인(안 제118조의9제2항)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조건 등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5제1항)

-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함.

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기재사항 확대(안 제118조의16제1항)

-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발행인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를 추가함.

사. 최소청약기간 도입(안 제118조의16제3항)

- 투자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청약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

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6.
- 마감일자 : 2018. 8. 16.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일부 경미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공원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을 허용하여 활동공간 제공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행위제한 완화 (안 제29조)

- 거주민의 주거생활 및 영농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경미한 행위로 분류

나. 개인형 이동수단 자율운영 근거 마련 (안 제50조)

- 지자체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통행구간 및 안전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는 도시공원 내에서는 통행 허용

다. 행정조사 정비 추진 과제 이행 (안 제40조)

- 지자체장이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요구 가능한 자료는

설치허가 신청서류 보완 등으로 한정

4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6.
 - 마감일자 : 2018. 8. 16
- 최근 무인동력비행장치(일명 ‘드론’)를 이용한 도시민의 여가 및 취미 생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시설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고,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공원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안 제11조제2항, 별표4)
 -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휴양시설)로 추가
 - 나. 도시공원 내 드론연습장 허용 (안 제9조 제11조, 별표1)
 - ‘드론조종연습장’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2kg 이하 무인헬리콥터·멀티콥터의 연습을 허용

50.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6.
 - 마감일자 : 2018. 8. 16.
- 조정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진흥시설과 조정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정진흥시설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6조)
- 조정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이상의 조정 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5개 업체 이상이 입주하는 것으로 조정함.

나.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개선(안 제7조)

-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 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해야 하는 것을 그 밖의 지방자치 단체와 동일하게 10개 업체 이상이 밀집하여 상주하는 것으로 조정함.